서울특별시 복지 분야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02

2017년 9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7. 8. 14.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7. 8. 16.
3. 상정일자 :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8월 31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복지본부 김용복 본부장)

1.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분야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나. 고령사회를 맞아 장년층에게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복지분야에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을 운영하고 있음

다. 이에 복지분야 출연기관(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등)의 원활한 운영과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복지분

야 출연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 관련법령

- 공통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례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사업

○ 서울시복지재단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 국내・외 복지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 복지관련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
-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여가 지원 사업, 가족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
-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 장년층 사업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 연계
- 기타 시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다.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복지재단

-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우리시 복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문적인 정책 연구 및 조사·분석 기능을 수행하고
-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와 서비스 개선 등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민간조직의 장점을 활용하여 시민의 욕구가 반영된 우리시 복지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복지재단 운영비 출연 필요

○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 50플러스 재단은 고령화와 베이비부머의 본격적 은퇴에 대비, 기존 노년층

과 다른 특성과 욕구를 가진 장년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정책적 대응 필요에 따라 관련 정책을 총괄·조율하는 전담 기관으로

- 시, 기관, 민간과 사회적 파트너십으로 상호협력하여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사업이 아닌, 당사자의 수요에 기반하여 장년층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교육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단 및 캠퍼스 운영비 출연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동의안의 취지

○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을 위한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는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적 통제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가 편법적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관련법령의 정비취지에 공감하나, 출연기관의 설립시 타당성검토,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자치부 협의, 조례안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는 점과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해 매년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출연금액을 제외한 출자·출연의 여부만을 승인토록 하는 조치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출연 현황

○ 집행부는 복지분야에서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50플러스재단')의 기관 운영을 위해 매년 출연금을 다음 표와 같이 편성·지원하고 있음.

<표> 지난 5년간 출연 현황(복지재단 및 50플러스재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28,732	24,587	20,806	28,441	32,116
서울시복지재단	28,732	24,587	20,806	22,004	21,483
50+재단	-	-	-	6,437	10,633

<표> 앞으로 5년간 출연 계획(복지재단 및 50플러스재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39,595	42,308	48,784	49,770	
서울시복지재단	23,341	23,808	24,284	24,770	25,265
50+재단	16,254	18,500	24,500	25,000	25,750

※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복지재단**은 서울시 출연 복지전문기관으로 2003년 설립되어 서울시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 복지시설 인증에서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사업까지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

○ **50플러스재단**은 베이비 부머 세대를 포함한 장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를 배경으로 장년층에 대한 인생재설계, 사회참여 등 특화된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바, 장년층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집행부내 행정위원회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2017.1월)에서 일부 위원들이 50플러스 재단에 대해 지적한 바를 보면, ① 공공기관과의 정보연계 ② 50플러스 재단에 대한 홍보기능과 상담원 역할 강화, ③ 평생교육진흥원과의 연계를 통해 독창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④ 수익성 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선순환 구조 형성, ⑤ 신임 직원들의 예산·계약·지출에 대한 관련 규정과 절차 등 교육 및 숙지 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재단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50플러스재단은 아래 도표와 같이 출연금 이외 추가 재원(사업 수익 등) 확보를 통해 2021년 이후에는 서울시 재정 의존도를 70%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설정하였으나, 아래 그래프에 진행되는 자체 수입의 진행상태로 보아, 2021년 재정의존도 70%대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앞으로 재단의 재정적 독립성 등을 감안할 때,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적극 반영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래프〉 50플러스 재단 설립 이후 출연금과 자체수입 비중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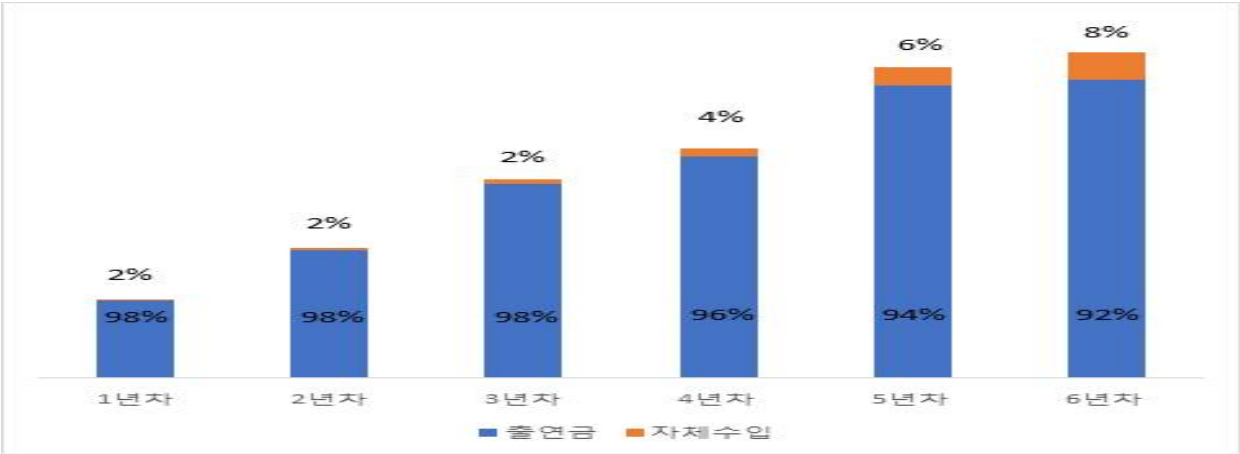

※ 〈그래프〉 서울시복지재단 15년 이후 출연금과 자체수입 비중 및 향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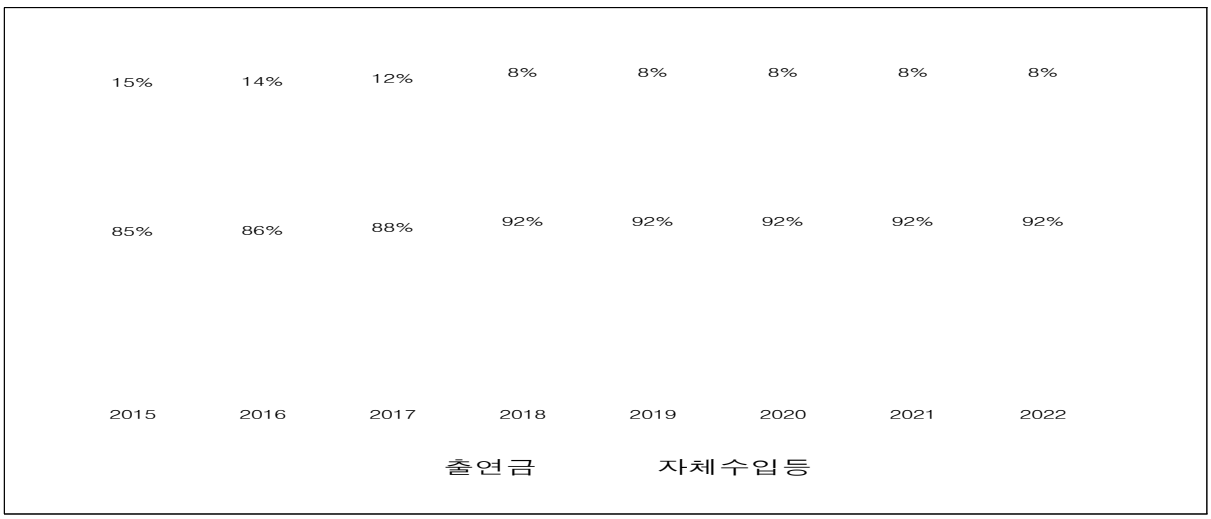

3 출연 필요성

○ 복지재단과 50플러스재단의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할 때, 각 재단에 대한 2018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 다만, 유사 사업의 중복 실시가 없도록 서울시복지재단 및 여성가족재단 등 기관 간의 업무상 조정·연계가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 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복지 분야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002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분야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나. 고령사회를 맞아 장년층에게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복지분야에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을 운영하고 있음

다. 이에 복지분야 출연기관(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등)의 원활한 운영과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복지분야 출연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 관련법령

- 공통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례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사업

○ **서울시복지재단**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 · 연구
- 복지 분야의 평가 · 심사 및 인증
-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 · 보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 국내 · 외 복지분야 연계 ·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 복지관련 자료 개발 · 관리 및 보급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 · 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
-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 · 여가 지원 사업, 가족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
-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 장년층 사업 관련 민 · 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 연계
- 기타 시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다.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복지재단**

-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우리시 복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문적인 정책 연구 및 조사·분석 기능을 수행하고
-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와 서비스 개선 등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민간조직의 장점을 활용하여 시민의 욕구가 반영된 우리시 복지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복지재단 운영비 출연 필요

○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 50플러스 재단은 고령화와 베이비부머의 본격적 은퇴에 대비, 기존 노년층과 다른 특성과 욕구를 가진 장년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정책적 대응 필요에 따라 관련 정책을 총괄·조율하는 전담 기관으로
- 시, 기관, 민간과 사회적 파트너십으로 상호협력하여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사업이 아닌, 당사자의 수요에 기반하여 장년층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교육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단 및 캠퍼스 운영비 출연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정성욱(☎2133-7315)

※ 작성자 :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정책팀 김형도(☎2133-7798)